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 정비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4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법률로 규정 및 그 기간 확대 등	2
2. 시행일의 적정성 및 적용례 신설 등(부칙)	7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0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법률로 규정 및 그 기간 확대 등(안 제7조제4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③ (생략)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나. 현행법령상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7조제1항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i)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등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일반채당금)’과 ii)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등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소액채당금)’을 규정함.

한편, 제7조제4항에서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대지급금 제도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및 한도(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지원 내용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한도: 최대 2,100만원 (단위: 만원)									
		<table><tr><td>30세 미만</td><td>30세 이상 40세 미만</td><td>40세 이상 50세 미만</td><td>50세 이상 60세 미만</td><td>60세 이상</td></tr><tr><td>1,320</td><td>1,860</td><td>2,100</td><td>1,980</td><td>1,380</td></tr></table>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320	1,860	2,100	1,980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320	1,860	2,100	1,980	1,380							

간이 대지 급금	퇴직자	-사업주 ①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체불확인서) 1년 이내 진정 제기	-지원 내용: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지원 한도: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사업주 ①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내용: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원 한도: 700만원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의 기간을 현행 기준(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등을 한 근로자 → 3년 이내)보다 연장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지급 요건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의 기간 연장을 통해 법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간이대지급금(소액채당금)’의 근로자 기준만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산대지급금(일반채당금)’의 근로자·사업주 기준 등은 위임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서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모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간이대지급금(소액채당금)의 근로자·사업주 기준뿐만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일반채당금)의 근로자·사업주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일부 기준만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가 사라져 법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사업주의 기준을 모두 법률로 상향하거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간이대지급금(소액채당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바, 근로자 범위 확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상황 미인지, 정보 부족, 군입대 등으로 소송 제기가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을 3년으로 연장시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 제기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나, 현재 시행령에서 대지급금의 종류별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 소송 제기 시점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하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자 수”이므로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상세 내용은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상세 사유) 참조

2. 시행일의 적정성 및 적용례 신설 등(부칙)

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을 두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사의 경과를 고려할 때 시행일 이후 공포될 것으로 공포일에 따라 개정안의 부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 요건 중 근로자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확대하면서도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소의 제기 등을 한 근로자는 모두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청구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그 대상인지 등에 관하여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소송 제기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나, ①현재 시행령에서 대지급금의 종류

별로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만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②모든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지급요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 제도 연혁

- 1998.7.1. 시행
- (2001.1.1. 시행) 대지급금 범위 확대
 - 최종 3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으로 지급 보장
- (2001.7.1. 시행) 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한액 인상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 업종별 50~300인 이하
→ 전 업종 300인 이하
 -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720만원 → 1,020만원
- (2005.7.1. 시행) 부정수급자 배액 징수제 신설 등 제재 강화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배액 징수제 신설 및 연대책임 확대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벌칙부과 대상 확대: 허위보고 또는 증명한 자→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2008.1.1.)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1,020만원 → 1,560만원
- (2015.1.1.)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최고 1,560만원 → 1,800만원
- (2015.7.1.) 간이대지급금 신설 및 부정수급 연대책임 부과
 - 간이대지급금 제도 시행: 기업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채불금품에 대한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지급(상한액 300만원)
 - 부정수급 연대책임 강화: 주도자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
- (2017.7.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300만원 → 400만원

- (2019.7.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400만원 → 1,000만원
- (2020.1.1.)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상향: 1,800만원 → 2,100만원
- (2020.12.8.)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대지급금 지급 범위 포함
- (2021.6.9.) 대지급금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등
 - 도산대지급금 지급후 차액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 (2021.10.14.)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 대지급금 용어 변경((체불 임금등·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2024.8.7. 시행)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장기 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첨부 3

대지급금 지급 성과 및 일반통계

□ 사업 성과

- 체불액 감소로 '21년~'22년 대지급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 이후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액이 급증하여 대지급금 지출액 또한 큰 폭 증가
- 특히, '19.7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인상(400→1,000만원)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초과하였으며, '22년 이후 5천억원 이상 지급
 - * '24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6,694억원)은 '23년(6,473억원) 대비 3.3%(221억원) 증가, '24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액(548억원)은 '23년(396억원) 대비 8.4%(152억원) 증가

□ 일반 통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금액
2024	24,327	128,638	724,207	1,073	7,826	54,828	23,254	120,812	669,379
2023	24,183	132,079	686,905	825	5,881	39,635	23,358	126,198	647,271
2022	22,271	108,284	536,864	713	5,430	36,576	21,558	102,854	500,288
2021	24,071	107,431	546,571	1,147	10,381	79,360	22,924	97,050	467,210
2020	24,975	110,610	579,690	1,463	14,032	109,975	23,512	96,578	469,715
2019	21,894	100,409	459,880	2,286	24,438	168,789	19,608	75,971	291,090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하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자 수”이므로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불가능함
 - 즉,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하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퇴직근로자의 규모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지급한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업주변제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되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정확한 지출증가분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입증가분의 경우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4년 예산안 기준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을 살펴보면, 2023년에 지급한 대지급금 지급액의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은 4.60%인 반면, 2022년에 지급한 대지급금 지급액의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은 11.33%로 연도별로 상이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도 4.8%(2022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계기간 동안 발생할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